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해고처분 취소 후 다시 한 징계의 효력

A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 다시 징계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징계무효확인판결이 선고된 뒤에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해도 법원판결을 잠탈한 것 아니다. 해고된 후 상당기간 내에 법률적 쟁송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개입이 금지되는 제3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아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는 것이므로 그 한도 내에서 해고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관련된 회사의 규정이나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한 경우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한 행동은 후에 해고가 무효로 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취업규칙 등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행위의 출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을 없으므로 징계사유의 조사나 징계과정에서 별다른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Q 잦은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등으로 회사에 누를 끼친 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 한지 여부

A 1997.11.25부터 같은 해 12.21까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동안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등으로 3회의 시달서를 제출하고도 여전히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내린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술노무사사무소(031-877-7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의무】

저는 사채업자인甲으로부터 금 3,000만원을 빌리고, 시가 1억원인 제 소유가옥을 담보로 제공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습니다.甲은 제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을 악용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제 집을 찾을 수는 없는지요?

A 가등기에는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와 매매계약 등에 의한 일반의 가등기가 있는데, 등기된 원인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귀하가甲으로부터 금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1억원 상당의 가옥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담보가

등기를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의 평가액과 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평가액 및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판례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1994. 1. 25. 92다20132).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甲은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귀하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본등기를 하였더라도 본등기는 무효가 되어甲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못하는 것이고,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겠으나, 만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귀하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지금이라도 위 가등기에 대해 처분금지처분신청을 하여 위 가등기를 처분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담보채권액 3,000만원을 변제 또는 공탁하여甲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키든지,甲에게 청산절차의 이행과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629-9311)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이번 휴가기간하고 생리날짜가 겹치는 것 같아 생리 미루는 약을 먹으려고 생각 중인데요. 생리 미루는 약이 피임약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 약이 부작용도 있고 몸에 되게 안 좋다고 해서요.

A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생리 미루는 것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생리 미루는 약은 경우용 피임약으로 생리예정일을 기준으로 5일에서 7일 전

부터 복용을 시작하여 미루고 싶은 날까지 복용을 하시다가 피임약을 끊으시면 됩니다. 경우용 피임약은 첫 복용할 때에는 2주 동안 다른 피임법을 같이 병행해야 피임이 되는 것처럼 생리를 미루기 위해서 드시는 피임약으로 생각하시고 만약 성관계를 하시기 되는 경우라면 임신의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다른 피임법을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날짜에 피임약을 끊으셨는데 생리가 나오지 않고 일주일이상 걸리다면

약사이나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먹는 피임약이 부작용도 있고 몸에 안 좋다고 하는 속설이 있지만 모든 여성이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차이로 부작용을 경험하는 여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 의 피임약의 비해 요즘에 나오는 피임약은 저용량으로 만들어지며, 오히려 여성의 불규칙한 생리기간을 규칙적으로 잡아 주기도 하고 빈혈예방, 자궁내막 증, 난소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경우라면 가까운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의사와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임약보다 성분과 용량이 다르므로 남의 몸에 가장 잘 맞는 피임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포천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이정화



소아천식

기관지 천식이란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좁아져서 호흡 곤란, 기침, 천명(쌉쌉, 휘이, 가르릉) 거리는 숨소리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 질환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특히 소아 천식환자에서는 다른 증상 없이 마른기침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기침형 천식)도 드물지 않다. 전체 소아 천식환자들 중 약 70%는 어렸을 때 자주 감기에 걸리다가 모세 기관지염을 앓게 되고, 천식성 기관지염을 앓은 다음에 천식으로 된다. 기관지 천식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이며, 소아 천식의 약 80%는 알

레르기가 그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첫째는 예방요법이다. 아이의 환경관리를 해주고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들을 제거해주거나 피하도록 해주는 적극적인 회피요법이다. 그리고 천식 예방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방약을 쓸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효과가 나타나 후에도 꾸준히(6개월~1년) 써야 한다. 둘째는 면역요법이다. 원인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엔 원인 알레르겐을 환자에게 조금씩 주사하여 면역을 생기게 하는 것이다. 면역요법은 규칙적으로 받아야 하며, 치료 도중에 증상이 없어서 만족하면 보호자들 다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실패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질환은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병이므로

너무 조금씩 서둘 필요는 없다. 세번째 치료법으로는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물 치료해 주는 대증요법이 있는데, 약물치료는 경우제보다 적은 양으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부작용이 적은 흡입약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소아천식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낫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생동안 지병으로 앓게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므로 방심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소아 천식은 어른에 비해서 그 경과가 양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소아 천식환자가 전부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좋아졌던 사람들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좋아지는 경우라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이고도 적절한 조치를 받아서 속히 치료해야 하며, 전문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심신의 단련과 함께 꾸준히 치료를 계속하여 성인 천식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문의전화 : 031-539-9167)

전·기·상·식

한전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장 신재우



신재생 에너지란

■신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햇빛, 물,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
정부고시 기준가격 적용 대상
- 총 설치비용 정부 무상지원금 지원 비율이 30% 미만이거나 발전원별 설비용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준가격 적용기간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총 15년(태양광 전원은 15년 또는 20년)으로 함
■정부고시 기준가격 적용 대상

에너지로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생산하는 에너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기준가격 적용대상은 설치확인서 발급일 기준 누적 설비용량으로 각각500MW, 1,000MW, 50MW까지 함
- 2011년6월30일 이전에 발전차액지원 누적 설비용량이 90%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점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은 누적 설비용량을 초과하여도 기준가격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 총 설치비용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 비율이 30%이상이거나 발전원별 설비용량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에 의한 의무와 대상으로 설치된 설비는 월 가중평균 계통 한계가격 적용함 ※ '07년 가중평균 계통 한계가격(SMP) : 83.50원/(KWH)
■정부고시 기준가격 적용량 제한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기준가격 적용대상은 설치확인서 발급일 기준 누적 설비용량으로 각각500MW, 1,000MW, 50MW까지 함
- 2011년6월30일 이전에 발전차액지원 누적 설비용량이 90%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점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은 누적 설비용량을 초과하여도 기준가격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문의 :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 (031-539-0257)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국세부와 체적기간은 세목에 따라 5년에서 15년까지입니다.

A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각 세목에 따라 또는 납세자의 납세협력 위반의 유형에 따라 15년까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보통의 세금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성실히 신고 납부한 경

우에는 5년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에는 1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 간이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고액 상속·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제3자의 명의로 패이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행 전환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와, 상기 과세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속이나 증여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신청.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의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입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중(031-872-6116)

GOEUN 고객이 만족할수 있는 기술력과 서비스 제공

Advertisement for Goeun Electric (고은종합전기(주)).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odern building and lists various services: construction, APT, buildings, mechanical/electrical safety, factories, hospitals, hotels, schools/offices, roads/signs, interiors, and more. It also lists staff and contact information.